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Diarsenic trioxid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327-53-3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눈이나 몸을 씻을 수 있는 세안시설과 샤워시설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불 침투성 바닥, 독성 흡 응축장치, 분말제거 장치를 갖출 것. - 호흡보호구, 전면보호구, 내산성장갑, 고효율의 입자필터가 장착된 안면보호구, 보안경(dust-proof goggle)을 반드시 사용할 것. -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사용한 후 식사, 흡연,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물과 비누로 손을 꼭 씻을 것. - 피부보호를 위해 칼라민(calamine) 로션, 산화아연 분말, 실리콘이 함유된 내비소성 크림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오염된 작업복은 분리하여 세탁할 것.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 화재 시 산화비소(Ⅲ) 증기가 방출되어 심한 용혈작용을 유발하므로 주의할 것. (Arsenic)
	보관·저장	- 열원, 산화제 및 강산화제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 -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밀폐보관 할 것. -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금속비소는 산화하기 쉬우므로 진공 또는 불활성가스 중에 보관할 것. (Arsenic) -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반응열로 인해 발화되므로 주의할 것 - 화재 시 독성가스가 방출되므로 주의할 것 - 절대로 용기 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분진 제거 시 절대로 쓸지 말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